

##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

2024년 10월호

### 1. 법률

- 가.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
- 나.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
### 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- 가. 전자금융감독규정
- 나.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

### 3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
- 나.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
- 다. KSM 운영지침

### 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
- 나.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
- 다.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

## 1. 법률

- 가.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(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요건 및 행위규칙)
- 나.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의 범위에 추가)

## 1. 법률\*

### 가.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(2024/9/10 개정 · 2024/9/15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「전자금융거래법」이 개정(법률 제 19734호, 2023. 9. 14. 공포, 2024. 9. 15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(제3조 삭제)
  - 선불전자지급수단은 ‘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’을 요건으로 함
  - 발행인의 범위에서 ‘발행인과 모회사·자회사 등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’을 제외함으로써 이용자가 발행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전자지급수단도 이 법의 규율을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에 포함
-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및 운용방법(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)
  -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신탁 등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도록 함
    - 선불충전금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등의 합계액에서 재화·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한 금액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
  -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선불충전금을 신탁의 방법으로 운용하거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때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하거나 국채·지방채를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함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

□ 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사유(제13조의4 신설)

-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선불충전금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

□ 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(제13조의5 제2항 신설)

-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우선하여 지급할 때 그 지급 금액은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을 한도로 하여 선불충전금의 총액을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
-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선불업자로부터 이용자 식별 정보 등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, 선불충전금의 지급 사유 시기 및 방법 등의 사항에 대한 선불업자의 공고 절차를 거쳐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함

□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(제13조의6 제1항 신설)

-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도록 하고, 점검일을 기준으로 실제 별도관리되어 있는 금액이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그 부족한 금액을 추가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함

□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(제13조의7 제1항 신설)

-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,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, 선불충전금 지급사유, 이용자의 청구방법 등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

□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·관리 업무 등록 면제기준(제15조 제5항)

- 선불전자지급수단의 ‘발행잔액’ 및 ‘연간 총발행액’이 각각 ‘30억원’ 및 ‘500억원’ 미만인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

□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(제22조의2 제1항 신설)

-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선불업자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고, 전문인력 및 물적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로 한정

□ 소액후불결제업무 경영 선불업자의 행위규칙(제22조의3 신설)

-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경영하는 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에 대한 이자를 이용자로부터 받는 행위,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신용카드업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

## □ 선불업자의 행위규칙(제22조의4 신설)

- 선불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,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예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

## 나.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(2024/9/10 개정 · 2024/9/15 시행)

## 1) 개정 이유

## □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를 하는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「전자금융거래법」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사항을 적용하기 위함

- 소액후불결제업무란,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를 말함

## 〈소액후불결제업무〉

-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중·저신용자 또는 금융이력부족자(Thin-Filer)에게도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포용금융 및 핀테크 업체의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혁신금융의 취지 하에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 운영 되었었음
- 개정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

## 2) 주요 내용

## □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는 선불업자를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범위에 추가(제2조 제5항 제3호)

## □ 소액후불결제를 금융상품의 유형 중 대출성 상품의 범위에 추가(제2조 제1항 제4호의2, 제3조 제2항 제2호의2)

- 「전자금융거래법」상 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여 '대출성 상품'으로 규정
- 소액후불결제에도 설명의무 등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,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기능-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하여 불합리한 규제 차이의 가능성을 차단

□ 금융상품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

- 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함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
  - 적합성원칙은 소비자의 재산상황, 신용 및 변제계획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를 금지(제17조)
  -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은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, 다만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그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## 2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

가. 전자금융감독규정 (선불업 등록면제 금액 설정)

나.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(소액후불결제 적합성 원칙 적용시 자체 기준 적용)

## 2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\*

## 가. 전자금융감독규정 (2024/9/10 개정 · 2024/9/15 시행)

## 1) 개정 이유

- 개정 「전자금융거래법」(법률 제19734호, 2023. 9. 14, 일부개정) 및 동 법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령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를 보호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

## 2) 주요 내용

## □ 선불업 등록면제 금액 설정(제42조)

- 개정법상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위임해 시행령에서 금액 기준을 정한 바, 해당 금액 산정기준 설정

## □ 선불업 등록절차 정비(제48조)

- 개정법에 따라 선불업 등록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, 선불업 등록절차 정비

## □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세부 내용(제56조의3, 제56조의4)

- 개정법상 선불업자에게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을 받아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, 승인신청서,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등 관련 세부 내용 규정

## □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세부 내용 규정(제56조의5, 제56조의6, 제56조의7)

- 시행령에서 규정한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총제공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이미 부여한 한도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, 경영 건전성 관리의 세부 기준, 제공 가능한 연체 정보의 범위와 같은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사항 규정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## 나.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(2024/9/9 개정 · 2024/9/15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「전자금융거래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금융상품 성격을 가지는 소액후불결제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소액후불결제 적합성 원칙 적용시 자체 기준을 적용(제10조 제3항 제1호의2)
  - 적합성 원칙 적용시 금소법령에 규정된 일련의 기준이 아니라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소액후불결제를 추가
- 전자금융거래법령상 소액후불결제 관련 설명의무 사항을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설명의무 대상으로 추가(제12조 제5항 제3호)
  - 구매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상 설명의무가 있는 항목들을 금소법상 설명의무 대상으로도 추가
- 청약철회 적용대상에서 소액후불결제는 제외(제30조 제3항 제3호)
-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 대상에서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 경영 전금업자는 제외(별표2 비고 제1호 마목 및 제2호 가목)
  -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경영하는 전자금융업자 중 전년 자산 총액 5조원 미만인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, 준법감시인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함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### 3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(장외파생 공동기금 산출기준 변경)
- 나.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(지연손해금의 산출방식 개선)
- 다. KSM 운영지침 (중소기업 관련 등록요건과 제출서류 삭제)

## 3. 한국거래소 규정\*

### 가.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4/9/26 개정 · 2024/10/14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장외파생 공동기금 산출기준을 변경하여 공동기금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
- 장외파생 증거금 최소변동성 산출시 특정 시장위기상황기간을 반영하여 증거금 모형의 경기순응성을 개선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공동기금 산출기준을 직전 60영업일 총증거금초과위험액의 최댓값으로 변경(별표 1 제1호 및 제2호)
  - 공동기금 산출기준일을 특정일에서 직전 60영업일로 확대하고, 해당 기간의 총증거금초과위험액 중 최댓값을 사용
- 증거금 최소변동성 산출시 시장위기상황 기간의 금리자료 반영(별표 5 제5호)
  - 증거금 최소변동성 산출시, 거래소가 정하는 특정 시장위기상황(2년)의 금리 데이터를 추가하여 최소변동성의 급락 방지 및 증거금 모형의 경기순응성 개선
    - 최소변동성 산출시 총 12년의 IRS 금리 데이터 활용(증거금 산출일 기준 과거 10년 + 특정 시장위기상황기간 2년)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## 나.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4/9/20 개정 · 2024/9/23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지연손해금의 산출방식 개선, 고유거래식별기호의 시행일 확정 · 발급기관 결정기준 변경 및 감독기관 제공 보고서 관련 규정의 명확화 등 TR 운영 및 국제기준 반영 등과 관련된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지연손해금의 산출방식 개선(제28조)
  - 이용료 체납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과 · 납부 등의 업무 간소화를 위하여 1,000원 단위 미만의 지연손해금을 절사하도록 규정
- 고유거래식별기호(UTI)의 형식 시행일 확정 및 UTI 발급기관 결정 기준 변경(별표 1, 규정 제1928호 부칙 제1조 · 제2조)
  - UTI 형식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확정하고, 시행일 확정에 따라 시행일 전 UTI 발급에 관한 특례 부분 삭제
  - 복수 국가의 TR 보고서 UTI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해외 주요국의 UTI 발급기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국내 기준을 변경
- 감독당국 보고서(정기) 양식 명확화(제22조 제1항)
  - TR의 감독당국 제공 보고서 양식(별표 3)은 감독당국에 제공해야 할 최소한으로 감독당국 요청이 있는 경우 보고서의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
- 감독당국 보고서(정기)의 제출 방식(제22조 제2항)
  - 감독당국에서 직접 보고서를 조회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KRC-TR이 해당 보고서를 TR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공
- 수시보고서 제출 근거(제22조 제3항)
  - 별표 3의 양식에 따른 보고서 외에도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 관리 등에 필요시 감독당국에 관련 보고서를 작성 · 제공가능함을 명시

□ 야간거래시 UTI 제공의무 시한 명확화(별표 2)

- 야간거래의 보고시한(T+2일 24:00)에 맞추어 UTI 발급기관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UTI 제공시한도 T+2일 11:00로 변경
  - 야간거래는 거래일 당일 18시 이후 24시 전까지 체결된 거래를 말함

□ 보고업무담당자 신고서 생년월일란 삭제(별지 제1호의2)

- 보고업무담당자 지정·변경 신고서 담당자의 생년월일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위해 신고서 서식에서 생년월일란을 삭제

□ 보고대행기관 변경 신청 관련 안내(별지 제5호)

- 보고대행기관 변경 신청시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존 대행기관에 대한 해지와 거래내역 이관이 이뤄지도록 명시

## 다. KSM 운영지침 (2024/9/20 개정 · 2024/9/30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불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성장지원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
  - 등록신청법인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지 않고 중소기업증명서류를 필요 제출서류 목록에서 제외

### 2) 주요 내용

- 등록신청서와 양도제한 관련 대표이사 확인서 통합(제4조 제6호 및 별지 제1호, 제2호)
  - 별지 제1호 등록신청서에 양도제한 관련 대표이사 확인 내용을 추가하여 별지 제2호 대표이사 확인서는 별도 제출하지 않도록 함
- 중소기업 관련 등록요건과 제출서류 삭제(제3조 및 제4조 제7호)
  - 등록신청법인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어 등록요건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증명서류를 제출서류 목록에서 제외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#### 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(투자자문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 개선)
- 나.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(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변경 및 중도상환)
- 다.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(부실우려 등급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경공매 착수)

## 4. 금융투자협회 규정\*

### 가.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(2024/9/19 개정 · 2024/9/20 시행)<sup>1)</sup>

#### 1) 개정 이유

-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(2024. 8. 14. 시행)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관련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
  - 투자자문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 업무수행을 위한 등록요건 개선

#### 2) 주요 내용

- 투자자문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 개선(제2-10조)
  - (기존) 투자자문업자(5-1-1)로서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i) 3종(증권, 펀드, 파생) 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거나, ii) 투자자산운용사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함(제2-10조 제1항 제2호)
  - (개정) 상기 i)의 경우에는 3종(증권, 펀드, 파생) 투자권유자문인력 중 어느 하나의 등록요건만 충족하여 등록해도 당해 요건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
    -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취급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인력규정 제1-3조제1호를 준수하여야 함
    - 시행령 별표3의 등록업무단위 중 5-21-1의 투자자문업자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은 종전과 동일
- 일부 자격 시험 과목 조정(별표 3-1, 3-2, 3-6, 3-7)
  - 투자자문인력과 투자권유대행인은 업무내용이 유사하므로 두 시험의 과목을 비교하여 일부 업무 활용도가 낮은 과목 등 조정 필요
  - 불필요한 과목 조정 및 필요 과목 확대 등 두 시험 과목에 대한 합리적 조정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1) 별표 3-1, 3-2, 3-6, 3-7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

- 현 체계상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업무 활용도가 낮은 과목 조정
- 불완전판매 등 업무수행에 따른 법률 이슈 사전 방지를 위해 법규 과목 문제 확대 등

## 나.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(2024/9/19 개정 · 2024/11/1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‘공매도 제도개선 방안’(2024. 6. 13, 민당정협의회)의 후속조치로 기관 · 법인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의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상환기간(제17조)
  - 금융투자회사가 중개하는 차입공매도 목적의 상장증권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함
  - 기간연장을 포함하여 총 상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
- 대차증권의 중도상환(제18조)
  - 대여자 또는 차입자는 대차거래 종료일 이전에 대차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음
  - 대여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한 경우 차입자는 3영업일 이내에 대차증권을 인도하여야 함

## 다.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(2024/9/19 개정 · 2024/9/20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결과 ‘부실우려’ 등급 사업장의 경 · 공매등을 통한 신속한 정리를 위해 일부 개정하기 위함
  - 금감원에서 배포한 ‘사업장별 재구조화 · 정리계획 작성양식’(2024. 7. 22.)에 포함된 경 · 공매 지침의 내용과, FAQ(2024. 8. 9. 배포)를 반영하여 확정된 경 · 공매 기준으로서 모든 금융업권에 적용

### 2) 주요 내용

- ‘부실우려’ 등급으로 3개월 이상 연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연체기간 3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경 · 공매에 착수(제 6-15조)

- 공적보증 사업장, 본PF 사업장, 구조조정 진행 중인 사업장, 사업장채권을 상각방식을 통하여 정리하는 경우, 경  
공매 대상에서 제외 가능
  
- 최초 공매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매를 완료하여야 함(별표 17-2 제1조, 제2조)
  - 유찰시에는 유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공매 착수 원칙
    - 공매절차 지연이 불가피할 경우 해당 사유 등의 문서화 후 예외적용 가능
  
- 최초 공매시 최종공매가는 실질담보가치를 감안하여 합리적 설정(별표 17-2 제3조)
  - 재공매 시 최종공매가는 직전 공매 최종공매가보다 낮게 설정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